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하고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1896호, 2026.9.8. 공포, 2026.12.9. 시행)됨에 따라, 공항 표점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안되는 환경이나 시설을 정하되 조류 충돌위험 저감·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국제 민간항공기구 기준상 장애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레이저광선을 장애물 설치 협의대상에 삭제하고,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 관리계획을 전년도 수립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검토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0. 12. ~ 11. 6., 예정)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8 중 “수립하여”를 “전년도에 수립하여”로, “후, 매년”을 “후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고, 관할 지방항공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전년도”로, “관할 지방항공청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을 각각 제19조의10 및 제19조의11로 하고, 제1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9(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활동) ① 조류충돌예방위원회는 조류충돌 예방활동에 관한 문제의 분석, 조사 등의 과정에서 항공 관련 기관 간 정보를 교환하고, 제반 예방활동에 대한 심의 역할을 한다.

② 법 제31조의8제4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류충돌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행되어야 할 정책 범위
2. 조류충돌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예방에 관한 문제

제19조의10(중전의 제19조의9)제4항 중 “조류충돌위원회”를 “조류충돌 예방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2항제4호 중 “레이저광선”을 “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레이저광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2조제2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별표 20과 같다. 다만, 별표 20 제2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은 조류충돌위험 저감·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법 제31조의8에 따른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9조 중 “별표 20”을 “별표 21”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자에대한”을 “자에 대한”으로, “별표 21과”를 “별표 22와”로 한다.

별표 20 및 별표 21을 각각 별표 21 및 별표 22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8(공항별 조류충돌 위험 관리계획 수립) 공항운영자는 법 제31조의7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31조의9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이하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의8(공항별 조류충돌 위험 관리계획 수립) ----- ----- ----- 전 년도에 수립하여 ----- ----- ----- 후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고, 관 할 지방항공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전년도 --- 국토교통부장관 -----.
<신 설>	제19조의9(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활동) ① 조류충돌예방위원회는 조류충돌 예방활동에 관한 문제 의 분석, 조사 등의 과정에서 항 공 관련 기관 간 정보를 교환하 고, 제반 예방활동에 대한 심의 역할을 한다. ② 법 제31조의8제4항제5호에 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류충돌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행되어야 할 정책 범위

<u>제19조의9(공항별 조류충돌예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항별 <u>조류충돌위원회</u>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항운영자가 정한다. <u>제19조의10 (생 략)</u> 제22조(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2의2. (생 략) 3.·4. 삭 제 <u>5. 레이저광선 발사 장치의 위치, 발사 방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레이저광선</u> 6. (생 략) ② ~ ④ (생 략) 제47조(금지행위 등) ① (생 략)	<u>2. 조류충돌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예방에 관한 문제</u> <u>제19조의10(공항별 조류충돌예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u> ④ ----- ----- <u>조류충돌예방위원회</u>----- ----- -----. <u>제19조의11 (현행 제19조의10과 같음)</u> 제22조(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 ① ----- ----- ----- -----. 1. ~ 2의2. (현행과 같음) <u><삭 제></u>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금지행위 등) ① (현행과
--	--

②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지방항공청장의 승인 없이 레이저광선을 방사하는 행위

5.·6. (생략)

③ ~ ⑤ (생략)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양돈장 및 과수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이나 시설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이나 시설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레이저광선-----

5.·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2조제2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별표 20과 같다. 다만, 별표 20 제2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은 조류충돌위험 저감·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법 제31조의8에 다른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9조(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가 법 제58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의 처분기준은 <u>별표 20</u> 과 같다.	제49조(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 ----- ----- ----- <u>별표 21</u> -----.
제50조(수수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8조에 따라 비행검사를 받으려는 <u>자에대한</u>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u>별표 21</u> 과 같다.	제50조(수수료의 부과기준) ① --- ----- --- <u>자에 대한</u> ----- ----- <u>별표 22</u> 와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0]

공항 표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제47조제6항 관련)

1. 일반 적용 대상

연번	근거	환경이나 시설	공항 표점으로부터의 거리		
			3km	8km	13km
1	「농지법」 제2조 제1호가목	<u>전·답</u> -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조성된 농지 내 지목변경은 제외한다 -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승인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전·답은 제외한다.	○	○	○
2	「농지법」 제2조 제1호가목	<u>과수원</u> -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승인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과수원은 제외한다.	○		
3	「초지법」 제2조 제1호	<u>초지</u>	○		
4	「축산법」 제2조 제8의2호	<u>사육시설</u> - 해당 시설이 지붕 등으로 덮여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말산업 육성법」 제2조 제7호	<u>농어촌형 승마시설</u>	○		
6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	<u>저수지, 방조제(담수호)</u>	○	○	○
7	「식품위생법」 제37조	<u>식품제조가공업</u> - 해당 시설이 밀폐 가능한 구조이고, 폐기물 등의 처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u>축산물가공업</u> - 해당 시설이 밀폐 가능한 구조이고, 폐기물 등의 처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u>건강기능식품제조업</u> - 해당 시설이 밀폐 가능한 구조이고, 폐기물 등의 처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연번	근거	환경이나 시설	공항 표점으로부터의 거리		
			3km	8km	13km
10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수산물가공업	○		
11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9호	양식장 - 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외해양식업, 복합양식업 · 협동양식업의 경우 어류등양식업을 포함하지 않은 양식업은 제외한다.	○		
1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폐기물 처리시설 -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이 아닌 폐기물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 공항 표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범위의 지역에서는 해당 시설이 겹으로 드러나지 않게 덮여 있거나 밀폐되어 있고, 악취저감 등을 위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13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댐 - 홍수조절댐은 제외한다.	○	○	○
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골프장	○	○	○
1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승마장	○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바목	저수지 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저수지	○	○	○

2. 심의 대상

연번	근거	환경이나 시설	공항 표점으로부터의 거리		
			3km	8km	13km

연번	근거	환경이나 시설	공항 표점으로부터의 거리		
			3km	8km	13km
17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보호지역 - 공항 표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범위의 지역에서는 지정 사유가 조류의 서식·번식·도래지 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18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주변관리지역 - 공항 표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범위의 지역에서는 지정 사유가 조류의 서식·번식·도래지 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19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	습지개선지역 - 공항 표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범위의 지역에서는 지정 사유가 조류의 서식·번식·도래지 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20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9호	자연환경복원사업 - 공항 표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범위의 지역에서는 복원·보전·관리대상이 조류 및 조류서식지가 아닌 사업은 제외한다.	○	○	○
21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2 제1항제3호	대체자연조성 등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이행을 위한 대체자연 조성 등은 제외한다.	○	○	○
2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공항 표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범위의 지역에서는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하기 위한 대상이 조류가 아닌 구역은 제외한다.	○	○	○
2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야생생물 보호구역 - 공항 표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범위의 지역에서는 보호 대상이 조류가 아닌 구역은 제외한다.	○	○	○

연번	근거	환경이나 시설	공항 표점으로부터의 거리		
			3km	8km	13km
2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천연기념물등 - 지정대상이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으로 구성된 동굴 등 자연유산은 제외한다. - 공항 표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범위의 지역에서는 지정대상이 조류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가 아닌 천연기념물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붙이는 조건은 제외한다.	○	○	○
2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보호구역 - 공항 표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범위의 지역에서는 보호하기 위한 천연기념물등이 조류 또는 조류서식지가 아닌 구역은 제외한다.	○	○	○

비 고

- 기존에 조성된 환경이나 시설의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 해당 환경이나 시설의 본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재지정·재등록, 면허·허가의 갱신, 개보수, 재축·개축은 만들거나 설치해서는 아니 되는 환경이나 시설 대상에서 제외한다.